G - 112 - 2014

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4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 개요

o 작성자: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

o 제·개정 경과

- 201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o 관련 규격 및 자료

- HSE Tree-climbing operations (AFAG401)
- KOSHA GUIDE C-58-2012: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
- KOSHA GUIDE G-88-2012: 도로변 수목 관리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 M-86-2011: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3장(통로), 제6장(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)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0절 제4관 고소작업대

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4년 11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112 - 2014

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수목 등주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수목 등주 작업 시 이루어지는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일자형 사다리"란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 형태로 되어있고 지붕, 벽 등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 다.
- (나) "계단식 사다리"란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A자형태로 되어있고 힌지(Hinge)에 의하여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.
- (다) "등목벌채"란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 등을 윗부분부터 제거하는 벌채 방법을 말한다.
- (라) "주상용 안전대"란 고소작업장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결속하여 부착하는 밴드로, 큰 기둥에 연결하는 장비를 말한다.
- (마) "고사목"이란 병이나 산불, 노화 등으로 인해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말라 죽은 나무를 말한다.

G - 112 - 2014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수목 등주 작업의 유해·위험요인

- (1) 등주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질 위험
- (2) 작업 중 사다리의 흔들림으로 떨어질 위험
- (3) 나무의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기대던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질 위험
- (4) 잘려진 나뭇가지가 주변 작업자 또는 보행자에게 떨어져 맞을 위험
- (5) 작업구간 주변의 전선이나 전봇대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
- (6) 도로변에서 작업 시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힐 위험
- (7) 잘려진 나뭇가지나 바닥의 돌출부에 걸려 넘어질 위험
- (8) 고소작업차가 넘어져 깔릴 위험
- (9) 도로변 작업 시 지상 작업자의 무단횡단으로 차량에 치일 위험
- (10) 야외 작업 시 기후 조건(폭염 등)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

5. 수목 등주 작업 시 주의 사항

5.1 일반 안전사항

(1)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변 작업자 또는 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표시해야 한다.

G - 112 - 2014

- (2) 수목 등주 작업은 2인 1조로 실시하고,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(3)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운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.
- (4)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구간 주변의 전선과 전봇대 등의 감전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안전작업에 필요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.
- (5) 야외 작업 시 강풍 등의 기후로 인한 악조건 시에는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.

5.2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 시 주의 사항

- (1) 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설치한다.
- (2) 사다리 발판에는 미끄러운 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.
- (3) A형 사다리를 일자 사다리로 변형하여 작업하지 않는다.
- (4) 작업 전 사다리 기둥, 사다리 발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6) 사다리는 슬리퍼 등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착용하고 오르내리지 않도록 한다.
- (7) 사다리에서 작업시간은 30분 이하로 하고, 30분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.
- (8) 사다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에는 3점 접촉(두 다리와 한 손 또는 두 손과 한 다리 등)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- (9) 사다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에 사다리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.

G - 112 - 2014

- (10) 도로변에서 작업 시 가능한 인도(人道)에서 작업하고, 도로상에 사다리가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.
- (11) 주변에 전선이 있는 경우, 전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해야 한다.

5.3 고소작업차를 사용한 작업 시 주의 사항

- (1) 고소작업차 작업반경내 구조물, 고압전선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해야 하며,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.
- (2) 고소작업차 작업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- (3)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 적재물은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작업대 안의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(5) 작업장 주변 고압선이 있을 경우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(6)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안전모,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.
- (7) 연약지반에서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차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고,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여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.
- (8) 경사지에서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차의 바퀴에 고읶목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가지치기 등의 작업 시 떨어지는 가지 등에 맞지 않도록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.

5.4 가지치기 고소작업 시 주의 사항

G - 112 - 2014

- (1) 작업도구의 사용방법, 위험요인 등을 숙지하고. 작업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(2) 기계톱 사용자는 기계톱의 구조와 조작방법, 명칭, 위험요인 등을 숙지하고 작업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.
- (3) 기계톱 사용 시에는 작업간격을 최소한 5 m이상을 유지해야 한다.
- (4) 기계톱은 등반 작업자에게 전달되기 전에, 지상 작업자가 점검 후 등반 작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.
- (5) 기계톱 사용자는 기계톱의 구조와 위험요인 등을 숙지해야 하며,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.
- (6) 기계톱 사용 시 국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이 있으니,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, 방진 장갑을 착용한다.

5.5 등목벌채 작업 시 주의 사항

- (1) 등목벌채 작업자는 등목 할 나무의 외형과 주변 상황을 우선 파악하여 등목 진행방향, 소요장비, 작업방법을 결정해야 한다.
- (2) 고사목일 경우 손도끼 등으로 수간을 찍어 고사목의 나무 겉부분이 벗겨지지 않는지, 목질이 부스러지는지 등의 부패정도를 판단한 후 등목을 결정해야 한다.
- (3) 나무에 구멍이나 썩은 가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피해서 등목해야 하고, 사전에 기계톱으로 제거해야 한다.
- (4) 제거목에 벌집이나 뱀 등이 있는지 파악하여 독충의 피해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.
- (5) 가지가 많은 나무를 오를 시에는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.

G - 112 - 2014

- (가) 등목 전에 보조 주상용 안전대를 휴대한다.
- (나) 가지에 막혔을 때, 보조 주상용 안전대를 가지 위로 올려 안전벨트와 결속시킨다.
- (다) 가지에 막힌 주상용 안전대를 해체하여 등목을 진행한다.
- (6) 등목벌채 작업자는 등목벌채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,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.
- (7) 야외에서 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, 오랜 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6. 지상 작업자의 주의 사항

- (1)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등주 작업자와 해당 업무에 대해 숙지해야한다.
- (2) 지상 작업자는 눈에 띄기 쉬운 색상의 조끼 또는 작업복을 착용한다.
- (3) 도로변에서 작업 시 지상 작업자는 인도(人道)에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등주 작업자와 소통을 하되, 도로상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.
- (4) 도로변에서 작업 시 지상 작업자는 무단횡단 등을 하지 않고,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.
- (5) 작업 현장에서 인원과 차량소통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, 작업 중에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.
- (6) 등주 작업자와 지상 작업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(7) 등주 작업자를 주시해야 하며 등주 작업자의 필요 사항을 예상하고, 필요 시 해당 장비나 도구를 올려 보내야 한다.

KOSHA GUIDE G - 112 - 2014

- (8)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.
- (9) 필요 시 지속적으로 작업을 평가하여, 위험한 상황이 발견되면 작업을 멈추고 해당 작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.